

호주와 일본의 고래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

영산대학교 법과대학

정갑용



〈 목 차 〉

1. 서 언
2. 포경규제의 법체제
3. 사실관계
4. 주요 쟁점
5. 평가 및 결론

1. 서 언

- 고래의 종류
- 고래와 인간생활
- 고래의 남획
- 1946년 국제포경규제협약
- 1986년 모라토리움
- 일부 국가의 포경재개 움직임



2. 포경규제의 법체제

- 1) 1959 IWC
- 2) 1980 CCAMLR
- 2) 1982 UNCLOS
- 3) FAO-COFI
- 4) CITES
- 5) CBD



3. 사실관계(1)

1) 분쟁의 경과

- 1982 IWC 상업포경 금지 결의
- 1986 모라토리움
- 일본의 JARPA (Japanese Whale Research Programme under Special Permit in the Antarctic)
- 2010. 5. 31, ICJ 제소

3. 사실관계(2)

2) 호주의 주장

- 상업포경의 전면 금지(ICRW § 10 (e)) 위반

” 상업포경의 포획금지를 신의성실하게 준수---”

- 남빙양 상업포경의 금지(ICRW § 7 (b)) 위반

” 남빙양에서의 상업포경 금지를 신의성실하게 준수---”

- 과학조사포경에 해당되지 않음(ICRW VIII)

- 국제환경규범 위반

‣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보호

‣ Precautionary Approach Principle

3. 사실관계(3)

3) 일본의 주장

- ICJ의 재판관할권 없음

- 고래분쟁은 1946 IWC에 의한 중재재판 적용

- IWC는 과학조사포경을 허용하고 있음

- 과학조사포경, 원주민포경, 부수포획 등

- 남빙양포경은 상업포경이 아님

- 밍크고래자원의 유지가능한 포획조사
- 모니터링 및 검색절차 등 합리적, 과학적 포획절차 채택
- 고래 계군 및 생태에 대한 엄격한 조사 실시
- 포획밍크고래의 판매는 과학조사비용에 충당

- 고래잡이규제에 관한 국제적 인식 변화

- 국제사회의 합의는 고래포획에 반대
- 반포경국가는 상업적 포경 금지에 찬성
- 포경국가는 '지속가능한 포경'에 찬성

4. 주요 쟁점(1)

1) 재판관할권

- ICJ의 재판관할권

- 의무적 관할권의 성립여부(ICJ규정 제38조 제2항, 선택조항의 수락선언)
- 1975년 호주의 수락선언, 2007년 일본의 자동유보

- ITLOS의 재판관할권

- 호주는 ITLOS, ICJ 선택(2002년), 일본은 선택하지 않음
- 따라서, 중재재판절차를 적용

- 고래분쟁의 재판관할권

- 고래분쟁은 그 본질이 '어업'에 관한 법적 분쟁
- 어업분쟁은 ITLOS나 IWC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
-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IWC 분쟁해결절차가 우선

4. 주요 쟁점(2)

2) 과학조사포경 여부

- 1986 모라토리움

- 상업적 포경을 전면금지

- 과학조사포경의 예외적 허용

- IWC VIII

“과학조사 포획두수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,

IWC 사전승인, 조사자료 및 결과제출을 조건으로 협약의 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

- 따라서, 일용 일본의 과학조사포경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



4. 주요 쟁점(3)

3) 국제환경규범의 준수 여부

- 신국제어업질서(New International Fishery Order)

▶ 1980 CCAMLR, 1982 UNCLOS, FAO-COFI, REMO

-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보호

▶ 1973 CITES, 1992 CBD

- Precautionary Approach Principle

▶ 1992 Rio Declaration Principle 15

▶ FAO's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

▶ 1994 UNFSA

▶ 1999 Southern Blue Tuna Case

• 환경보호를 위하여 예방적 조치를 실시

•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,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지양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됨

4. 주요 쟁점(4)

4) 남빙양 포경행위와 호주의 국가주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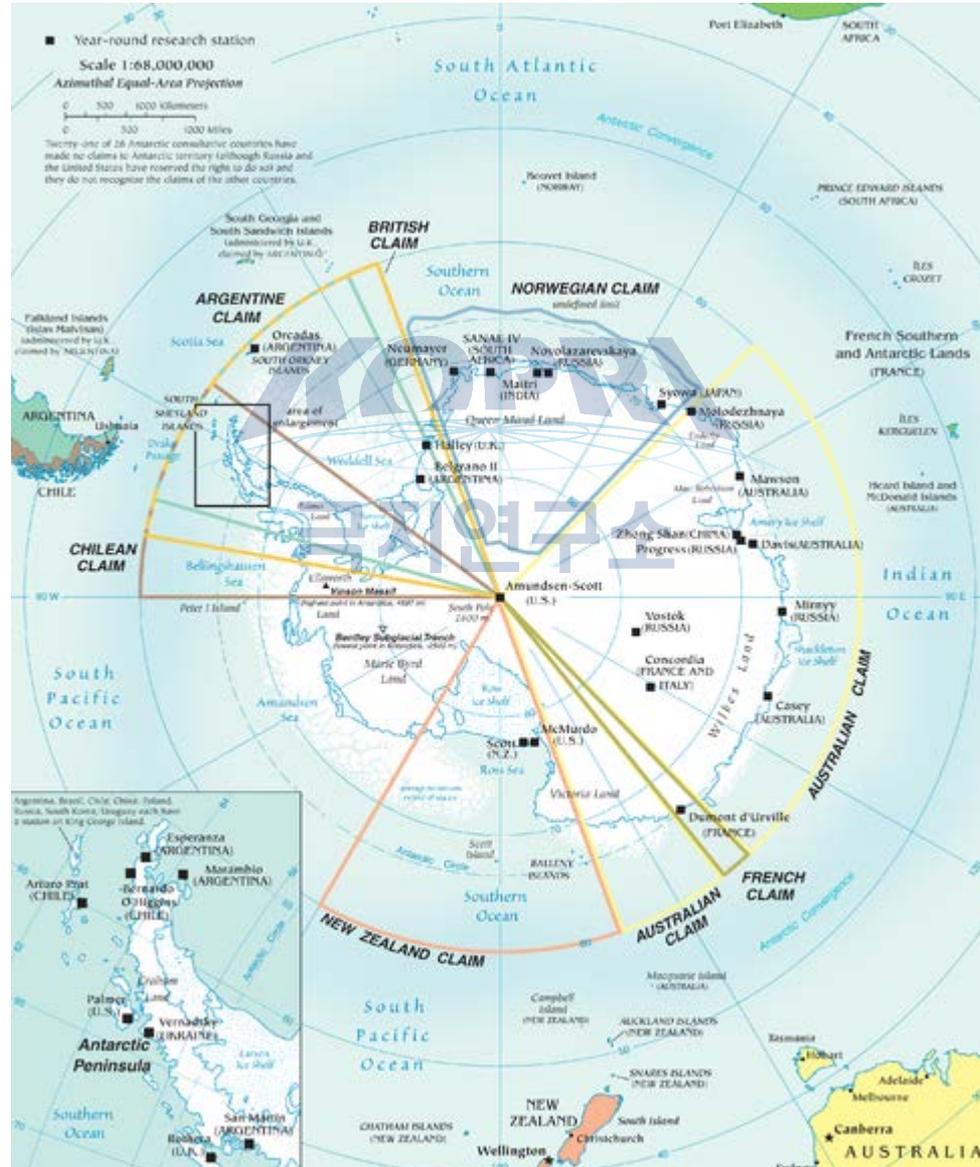
- 호주의 남극영유권 주장(1933년)

▶ 남극영유권 주장국가

• 호주, 아르헨티나, 칠레, 프랑스, 뉴질랜드, 노르웨이 및 영국(7개 국가)

- 남극영유권 주장은 '인류공동유산(CHM)' 원칙에 배치

남극 영유권 주장



5. 평가 및 결론(1)

1) 평가

-재판관할권

▸ ICJ, ITLOS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으며, IWC의 분쟁해결제도 적용

-과학조사포경 여부

▸ 외형적으로 IWC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나,
실질적으로 포획두수, 포획절차, 방법 및 이윤추구의 측면에서
순수한 과학조사포경이 아니라 상업포경에 가까움

-국제환경규범의 준수 여부

▸ 일본의 일방적 포경행위는 수산자원의 국제관리체제에 대한 도전

-남빙양 포경행위와 호주의 국가주권

▸ 인류공동유산은 국제사회 대다수의 합의, 호주의 남극영유권 주장은 부당

5. 평가 및 결론(2)

2) 결론

- 호주와 일본의 고래분쟁은 ICJ의 재판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으며 IWC의 분쟁해결절차 적용
- 일본의 과학조사포경은 실질적으로 상업포경에 해당
- 우리나라는 부수포획통계를 지속적으로 IWC에 보고함으로써 부수포획을 실질적인 포경쿼타로 활용
- 그 동안 우리는 포경재개를 주장하는 일본주장을 지지하였으나, 반포경국가와 포경재개국가를 조정하는 역할 강화 필요